

의안번호	제935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5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박재주, 최정훈, 안지윤,
김국기,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1. 개정이유

- 조례의 상위법인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문규범” 정의에 표준 발음법을 추가함(안제2조제3호)
- “공문서 등” 정의를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로 규정함(안제2조제5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 나.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어기본법」 제13조”를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글맞춤법”을 “한글 맞춤법”으로, “외래어”를 “표준 발음법, 외래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국어기본법」 제24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1조”를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등의”를 “소속 공무원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 제3조에 따른 임무와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5조의 광고물 한글 표기와 제13조와 제16조의 공문서 등 언어 사용과 관련되거나 국어”를 “국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3.	-----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 한글 맞춤법-----	
		— 표준 발음법, 외래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게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이름,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 현수막 · 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6조(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① · ② (생 략)	제6조(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③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3. (생략) 4.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5.·6. (생략)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생략)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도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	-----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4조----- ----- ----- ----- 5.·6. (현행과 같음)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 ----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1조-----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소속 공무원 또는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의 장
2. 제1호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삭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통보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호

○ 사 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